

※ 번역문은 민원 신청을 위한 참고용이며, 기존의 한글 서식에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こちらの翻訳文は民願申請の参考用であり、提出時には既存の韓国語の書式に韓国語でご記入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 12. 1.>
■ 自動車登録規則 [別紙第15号書式] <改正2022年12月1日>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自動車譲渡証明書（譲渡人・譲受人との直接取引用）

접수번호 受付番号	접수일자 受付日		
갑 甲	양도인 (대표자) 譲渡人 (代表者)	성명(명칭) 氏名 (名称)	주민(법인)등록번호 住民 (法人) 登録番号
		전화번호 電話番号	
		주소 住所	
	공동 명의자 共同名義者	성명(명칭) 氏名 (名称)	주민(법인)등록번호 住民 (法人) 登録番号
을 乙	양수인 (대표자) 譲受人 (代表者)	성명(명칭) 氏名 (名称)	주민(법인)등록번호 住民 (法人) 登録番号
		전화번호 電話番号	지분율(%) 持分比率 (%)
		주소 住所	
	공동 명의자 共同名義者	성명(명칭) 氏名 (名称)	주민(법인)등록번호 住民 (法人) 登録番号
		전화번호 電話番号	지분율(%) 持分比率 (%)
		주소 住所	
거래 내용 取引内容	자동차등록번호 自動車登録番号	차종 및 차명 車種及び車名	

	차대번호 車台番号	매매일 売買日
	매매금액 売買金額	잔금지급일 残金決済日：
	자동차인도일 自動車の引渡日	주행거리 走行距離
		km km

제1조(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第1条（当事者の表示）譲渡人を「甲」、譲受人を「乙」とする。

제2조(동시이행 등) “갑”은 잔금을 수령하고 채권액을 상환한 후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인도한다.

第2条（同時履行等）「甲」は残金を受け取り、債権額を返済してから自動車と所有権移転登録に必要な書類を「乙」に引き渡す。

제3조(공과금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 다음 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제세공과금의 납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第3条（租税公課の負担）この自動車に対する諸租税公課は自動車引渡日を基準にしてその基準日までの分は「甲」が負担し、基準日の翌日からの分は「乙」が負担する。ただし、関係法令に租税公課の納付に関する特別な規定がある場合はそれに従う。

제4조(사고책임) “을”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第4条（事故の責任）「乙」はこの自動車を引き受けてから生じる全ての事故について、自己のために運行する者としての責任を負う。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자동차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 요건의 미비, 그 밖에 행정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第5条（法律上の瑕疵責任）自動車の引渡以前に行われた行政処分又は移転登録要件の不備、その他行政上の瑕疵に対しては「甲」がその責任を負う。

제6조(등록 지체 책임) “을”이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정해진 기간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第6条（登録遅滞責任）「乙」が売買の目的物を引き受けた後、定められた期間内に移転登録を行っていない場合は、それに対する全ての責任を「乙」が負う。

제7조(할부승계특약) “갑”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을”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第7条（分割承継特約）「甲」が自動車を分割払いで購入し、分割金の総額を支払わない状態で「乙」に譲渡する場合は、残りの分割金を「乙」が承継して負担するかどうかを特約事項の欄に記入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8조(양도증명서) 이 양도증명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지니고(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자가 소지한다) “을”은 이 증명서를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할 때(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第8条（譲渡証明書）この譲渡証明書は2通作成して「甲」と「乙」がそれぞれ1通ずつ保有し（共同名義の場合、代表者が保有する）、「乙」はそれを所有権移転登録申請を行う際（残金決済日から15日以内）に登録機関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9조(대표자)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양도인, 대표양수인은 공동명의자의 합의에 의해 정한다.

第9条（代表者）共同名義の場合、代表となる譲渡人と譲受人については、共同名義者の合意により決める。

특약사항:

特約事項：

수입인지 (収入印紙)
「인지세법」에 따름 (뒷면 여백에 붙임) 「印紙税法」に従う (裏面の空欄に貼る)

양도인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양수인과 직접 거래로 소유자동차를 양도하고,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 거래내용과 같이 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譲渡人は自動車売買事業者を介さずに譲受人との直接取引で所有する自動車を譲渡することとし、「自動車登録規則」第33条第2項第1号に基づき上記の取引内容とおり譲渡したことを証明します。

	년	월	일
	年	月	日
양도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양수인 (대표)	(서명 또는 인)
譲渡人 (代表)	(署名又は印)	譲受人 (代表)	(署名又は印)
양도인 공동명의자	(서명 또는 인)	양수인 공동명의자	(서명 또는 인)
譲渡人の共同名義者	(署名又は印)	譲受人の共同名義者	(署名又は印)

유의사항

留意事項

1. 양도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으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1. 譲渡人の注意事項: この譲渡証明書を記入する際、譲受人の基本事項を記載しないと譲受人の無断転売等による不測の損害を被る可能性がありますので、必ず譲受人の基本事項を記載してください。
2. 양수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이 차량에 대하여 부과된 자동차세 및 제세공과금의 납부, 압류·저당권 등의 등록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譲受人の注意事項: この譲渡証明書を記入する際、この車両に課せられた自動車税及び諸租税公課の納付、差押・抵当権等の登録及び排出ガス減少装置の自己負担金の納付有無を確認して不測の損害を被ることが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
3. 공통사항: 이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직접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자동차매매업자 포함)가 사용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共通事項: この当事者取引用譲渡証明書を直接取引の当事者ではない者（自動車売買業者を含む）が使用した場合は自動車管理法令に基づき処罰されます。
4. 정당한 사유 없이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및 제79조제16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4. 正当な理由なしに走行距離を変更した者は「自動車管理法」第71条第2項及び第79条第16号に基づき懲役又は罰金に処せられます。
5. 자동차정비, 검사, 주행거리 이력, 자동차세 납부 여부, 압류내역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내역 등 자동차종합이력 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마이카정보」) 또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확인 바랍니다.
5. 自動車整備、検査、走行距離の履歴、自動車税納付有無、差押内訳及び排出ガス減少装置の自己負担金の納付有無等、自動車の履歴情報については国土交通部で提供するスマートフォンのアプリ（「マイカー情報」）又は自動車に関する民願の国民ポータルサイト（www.ecar.go.kr）にて照会できますので、ご確認ください。
6. 양도인이 서명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양도인이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6. 譲渡人が署名した場合は本人署名事実確認又は電子本人署名確認書を、譲渡人が捺印した場合は印鑑証明書を添付してください。